

산업통상자원부령

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국무위원 ○○○ (산업통상자원부장관)
연 월 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「전기사업법」 개정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과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등 2개 유형의 전기신사업에 대해 재생에너지 생산 전기를 사용할 경우, 전력시장 외 거래 허용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범위 등 개정법률 위임사항 구체화
(안 제3조의3)

나. 한전·전력거래소·사업자 간 시간대별 전력량 정보제공, 전기신사업 신청 등 원활한 사업 운영 및 관리에 필요사항 규정 (안 제17조의5, 제17조의6, [별지 제5호의2서식], [별지 제5호의3서식], [별지 제8호의3서식], [별지 제13호의2서식]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관계부처 협의 예정

라. 기타 :

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3, 제17조의5 및 제17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3(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범위) 법 제2조제12의12에서 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을 말한다.

1.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기저장장치에 저장한 후 판매하는 것이 확인될 것
2. 그 밖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에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

제17조의5(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전기공급) ① 재생에너지 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법 제16조의5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전기저장장치에 충전한 후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통하여 그 공급량을 확인해야 한다.

②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,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,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서로 제공해야 한다.

1.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시간대별 발전량
2.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시간대별 충전·방전량
3. 전기사용자의 시간대별 전기사용량
4. 그 밖의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16조의5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전기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7조의6(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공급) 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법 제16조의5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기자동차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통하여 그 공급량을 확인해야 한다.

②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,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,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서로 제공해야 한다.

1.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시간대별 발전량
2.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시간대별 충전·방전량
3. 그 밖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16조의5에 따른 재생에너지연계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

자원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.

별지 제5호의2서식, 별지 제5호의3서식, 별지 제8호의3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전기신사업 [] 등록
[] 변경등록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
		14일
등록신청 내역	성명(대표자)	상호(명칭)
	사업자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	
	사무소 소재지	
	(전화번호 :)	
	전기신사업 종류	
	[] 전기자동차충전사업 [] 소규모전력중개사업 []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[] 통합발전소사업 []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	

「전기사업법」 제7조의2제1항·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·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
([] 등록 [] 변경등록)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(지능형전력망 협회의 장) 귀하

첨부서류	1. 등록 신청의 경우: 다음 각 목의 서류 가. 「전기사업법 시행령」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. 사업계획서 2.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: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 증명서(신청인이 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 또는 사업자등록증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
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제 호

전기신사업 등록증

(전기자동차충전사업, 소규모전력중개사업,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,
통합발전소사업,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)

1. 성명(대표자):
2. 상호(명칭):
3. 사업자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:
4. 사무소 소재지:
5. 등록 연월일: 년 월 일
6. 기타:

「전기사업법」 제7조의2,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신사업(전기자동차충전사업, 소규모전력중개사업,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)을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직인

210mm×297mm[백상지(150g/㎡)]

※ 비고 (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)

- 6번란에 적는 사항은 별지로 작성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

전기신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14일
신고인	성명(대표자)	상호(명칭)	
	사업자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		
	사무소 소재지		
	(전화번호 :)		
	전기신사업 종류		
신고 내용	[] 전기자동차충전사업 [] 소규모전력중개사업 []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		
	[] 통합발전소사업 []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		
	등록번호		
	등록 연월일		
지위승계 연월일			
지위승계 원인			
[]양수 []상속 []합병 []분할			

「전기사업법」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신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양수의 경우: 양도·양수계약서 사본 2. 상속의 경우: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.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: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전기신사업 약관 ☐ 신고서
☐ 변경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 7일
신청인	성명(대표자)	상호(명칭)
	사업자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	
	사무소 소재지	
	(전화번호 :)	
	전기신사업 종류 [] 전기자동차충전사업 [] 소규모전력중개사업 []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[] 통합발전소사업 []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	
약관 변경내용		

「전기사업법」 제16조의2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신사업 약관을
([] 신고 [] 변경신고) 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(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) 귀하

첨부서류	1. 신고의 경우: 다음 각 목의 서류 가. 전기신사업 약관 나. 요금 또는 가격 산정의 근거	수수료 없음
	2. 변경신고의 경우: 다음 각 목의 서류 가. 전기신사업 약관의 신·구 대비표 나. 전기신사업 약관의 변경사유 및 근거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조의3(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범위) 법 제2조제12의 12에서 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을 말한다.</u> <u>1.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기저장장치에 저장한 후 판매하는 것이 확인될 것</u> <u>2. 그 밖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에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</u>
<u><신 설></u>	<u>제17조의5(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전기공급) ①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법 제16조의5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전기저장장치에 충전한 후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통하여 그 공급량을 확인해야 한다.</u> <u>②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, 재</u>

<신 설>

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,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서로 제공해야 한다.

1.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시간대별 발전량
2.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시간대별 충전·방전량
3. 전기사용자의 시간대별 전기사용량
4. 그 밖의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16조의5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전기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7조의6(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공급) 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법 제16조의5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기자동차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통하여 그 공급량을 확인

해야 한다.

②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,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,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서로 제공해야 한다.

1.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시간대별 발전량

2.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시간대별 충전·방전량

3. 그 밖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16조의5에 따른 재생에너지 연계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.